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행정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적법한 사전 서
면통지가 반드시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함 - 등기우편 발송, 인터넷 게시판 공지 등은
불충분함 -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 사유: 서울행정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
86828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 (1) 보건소에서 의사에게 무면허 의료기사로 하여금 엑스선 촬영을 하게 하였다는 의심
을 가지고 현지조사에 응하라는 명령을 하였으나 거부함
- (2)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결정
- (3) 사전통지서 발송한 후 나아가 업무정지처분 하였음
- (4) 해당 의사 - 사전통지서 받은 적 없다고 주장,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

송 제기

2.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 사전통지 송달 증거 없음, 행정절차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3. 행정법원 판결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다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그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참조), 처분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게 위반사실을 시인하였다거나 처분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위 대법원

2011두30687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미리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동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나, 발송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전통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4. 실무적 포인트

행정청이 민원인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함. 여기서 사전 서면통지는 당사자에게 송달되어야 유효함, 동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인터넷 게시판에 공지한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지 않음.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그 후속으로 한 불이익한 처분, 제재처분, 침익적 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할 수 있음. 행정소송, 행정심판으로 제기하여 취소할 수 있음.

행정소송, 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